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(홍준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77

발의연월일: 2021. 1. 19.

발 의 자 : 홍준표 · 한기호 · 최승재

윤한홍 • 배현진 • 김기현

홍문표 • 백종헌 • 조명희

구자근 • 권성동 • 강기윤

홍석준 • 윤상현 • 윤재옥

하영제 · 최연숙 의원

(179]

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 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둠(안 제4조).
- 나. 국가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로나19백신등의 충분하고 안정

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으며, 그 확보를 위하여 국내개발 지원대책 수립 및 해외 구매 판로 확보, 관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(안 제5조).

- 다.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하며,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·운송·보관·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6조).
- 라.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안 제7조).
- 마. 국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(안 제8조 및 제1 0조제1항제1호·제2호).
- 바.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의료인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들 의료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함(안 제9조).
- 사.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코로 나19 진단시약,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

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- 제1조(목적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퇴치를 위한 특별 대책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"(이하 "코로나19"라한다)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세계보건기구(WHO)가 COVID-19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감염병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의무) ①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국가적 감염병의 대응체계 발전,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,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.
 - ③ 코로나19의 진단, 백신 접종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부담으로 한다.
- 제4조(코로나19 대응위원회) ① 코로나19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(이하

-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,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감염병 분 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코로나19 감시 · 예방 · 차단 · 처분 등에 관한 사항
- 2. 코로나19 진단시설·장비·인력의 확충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에 관한 사항
- 3. 코로나19 진단시약, 백신 및 치료제(이하 "코로나19백신등"이라 한다)의 확보와 국민 대상 접종에 관한 사항
- 4.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로부터의 유입 방지 등에 관한 사항
- 5.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
- ④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둔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지원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코로나19백신등의 확보) ① 국가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

로나19백신등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는 코로나19백신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개발 지원대책 수립 및 해외 구매 판로 확보, 관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③ 코로나19백신등의 구매 및 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와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- 제6조(코로나19 백신의 접종) ①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국가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접종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확보, 운송·관리, 업무인력과 물품의 확보, 접종대상 분류와 우선순위 기준, 부작용 저감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·운송·보관·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코로나19 백신의 접종관리) ①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 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 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

- 템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제공하거나 접종 등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·운용할 수있다.
- ④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의 국제적 표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안전한 이동 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등) ① 국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의 운영비 등 경비는 국가가부담한다.
- 제9조(의료인력의 확보 등) ①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의료 인·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(이하 이 조에서 "민간의료인력"이라 한다)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③ 국가는 민간의료인력에 대하여 안정적 업무에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민간의료인력에게 「상훈법」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10조(손실보상) ① 국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 - 1. 제8조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
 - 2.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 동원으로 발생한 손실
 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
 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벌칙) ①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·운송·보관·접종을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제3항,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 병상을 동원한 의료기관,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의료인력 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